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의안 번호	1954
----------	------

발의년월일 : 2010. 2. .
발의자 : 박선희, 김동규, 홍연아외

제안이유

-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안산시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 하여하며 사업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구축방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사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
- 정신보건센터를 두며 센터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의료계 전문가, 소방서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협의체의 기능을 안산시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신 보건 네트워크 구축,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함(안 제9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 「정신보건법」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보건법」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사전입법예고 : 해당없음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 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③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안산시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리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시는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치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정신보건센터) ① 시는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업
 2. 알콜상담센터 운영
 3. 자살예방센터 운영
 4. 사회복귀시설 운영
 5.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 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신보건센터 담당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센터장
 2. 의료계 전문가
 3. 소방서 관계자
 4. 경찰서 관계자
 5.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6.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7. 정신질환자의 가족
 8. 시의원
 9. 정신보건전문요원
 10.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11. 기타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협의체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⑥ 협의체의 기능과 유사한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체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등)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4. 12. 31. 까지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산시정신보건사업계획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 · 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54
----------	------

제안년월일 : 2010. 2. 26.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기존 타 협의체 구성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조정함.

2. 주 요 골 자

- 알콜상담센터 운영,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알콜상담 사업, 자살예방 사업으로 변경함(안 제6조)
-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원에서 소방서 관계자와 경찰서 관계자를 삭제함(안 제7조).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2.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2. 알콜상담 사업”으로, “3. 자살 예방센터 운영”을 “3. 자살예방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를 “센터를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로 한다.

제7조제3항 “3. 소방서 관계자, 4. 경찰서 관계자”를 삭제하고, 5호를 3호로, 6호를 4호로, 7호를 5호로, 8호를 6호로, 9호를 7호로, 10호를 8호로, 11호를 9호로 한다.

제7조제6항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다른 위원회와 협의체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정신보건센터) ① (생략)</p> <p>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알콜상담센터 운영</u></p> <p>3. <u>자살예방센터 운영</u></p> <p>4.~5. (생략)</p> <p>③ (생략)</p> <p>④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제6조(정신보건센터) ① (원안과 같음)</p> <p>②</p> <p>1. (원안과 같음)</p> <p>2. <u>알콜상담 사업</u></p> <p>3. <u>자살예방 사업</u></p> <p>4.~5.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④ <u>센터를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u></p> <p>.....</p>
<p>제7조(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p> <p>①~②(생략)</p> <p>③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2. (생략)</p> <p><u>3. 소방서 관계자</u></p> <p><u>4. 경찰서 관계자</u></p> <p><u>5.~11.(생략)</u></p> <p>④~⑤(생략)</p> <p>⑥협의체의 기능과 유사한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p> <p>①~②(원안과 같음)</p> <p>③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2. (원안과 같음)</p> <p><u>3. (삭제)</u></p> <p><u>4. (삭제)</u></p> <p><u>3.~9.(원안 5.~11.과 같음)</u></p> <p>④~⑤(원안과 같음)</p> <p>⑥..... <u>다른 위원회와 협의체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u></p>